

# 변경 대비표

2024.10.11

- 펀드명 :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 정정사유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 상세내역 :

**[증권(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 - 투자자유유의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및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및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p>&lt;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gt;</p> <p>[요약]</p> <p>- 투자자유유의사항</p>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u> ,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으며</u> ,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
[요약정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및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및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